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2182(2021.7.20.)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572(2021.7.14.)호 관련입니다.
2.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결과(7.20일 11시 기준)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20일 10시를 기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 일최고기온 기준으로 전국의 40%(72개)지역 이상, 33°C 이상 3일 이상·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옥외 사업장 온열질환자 발생증가에 따른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폭염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기본수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분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4. 아울러, 건설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 및 휴식 시간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예찰 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새만금개발청장,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허청장, 도로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과장), 부산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과장), 제주지방항공청장(항공시설과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국토안전관리원장

주무관 이정수 건설안전과장 전결 2021. 7. 20. 한명희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4726 (2021. 7. 20.)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http://www.molit.go.kr
건설안전과

전화번호 044-201-3582 팩스번호 044-201-5553 / jsjm0328@molit.go.kr / 대국민 공개